

서울특별시의회
제314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

2022. 9. 21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이 중 환

□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
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
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
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의 입법불비 사태를 막고
박물관 내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중
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
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